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13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주호영 · 서명옥 · 김미애
김상훈 · 고동진 · 김성원
김도읍 · 장동혁 · 박수민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채권이 성립한 경우(이 법 시행 당시 수급권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금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금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 ----- -----. ----- ----- ----- ----- ----- -----있으며, <u>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